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21.

발의자 : 조경태 · 김경진 · 이찬열

김수민 · 박인숙 · 김재원

조훈현 · 이동섭 · 염동열

김영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무대기계·무대조명·무대음향 등의 분야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되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 및 해당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빈발하여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 및 공연의 전문성·안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 또는 그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, 무대예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).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,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

제14조의2제1항 중 “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

2.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

제33조제1항제7호 중 “제41조에”를 “제41조제1호·제5호에”로 한다.

제41조제2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
3.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
4.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

제42조 본문 중 “제41조의”를 “제41조제1호·제5호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4조(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③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,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</u> <u>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
제14조의2(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 <u><신설></u>	제14조의2(부정행위자의 자격 취소 등) ① ----- <u>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-----.</u>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2.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
<u><신설></u>	

	<p><u>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</u></p>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33조(행정처분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	제33조(행정처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
1. ~ 6. (생 략) 7. 그 밖에 제40조제1호·제2호 또는 <u>제41조에</u>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	7. ----- -----제41조제1호·제5호에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41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(현행과 같음)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

